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74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임오경·한준호·김병주

주철현 · 이용우 · 임호선

장철민 • 홍성국 • 이수진

정청래 · 최혜영 · 김남국

장경태 · 이원택 · 김민철

오영환 · 신현영 · 이성만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50조).

법률 제 호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 제목 중 "노임"을 "임금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노임 (勞賃)"을 "임금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노임"을 "임금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<u>노임</u> 에 대한 압류의 금지)	제50조(<u>임금</u> 에 대한 압류의 금지)
①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도급받	①
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 금	
액 중 그 문화재수리(하도급한	
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)에 종	
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	
할 <u>노임(勞賃)</u> 에 상당하는 금액	<u>임금</u>
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.	
② 제1항에 따른 <u>노임</u> 에 상당	② 임크
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	
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